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항공기 개발사업 대상 항공기 범위 확대 등 〉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73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항공기 개발사업 대상 항공기 범위 확대 등(안 제4조제1항 등)	2
[참고]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28.

다. 회 부 일 : 2026.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의 개발 등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우주산업자는 항공기·우주비행체 등을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항공기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의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항공기 개발사업 대상 항공기 범위 확대 등(안 제4조제1항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정부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항공기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 ----- -----.
1. <u>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u>	1. <u>항공기</u> -----
2. <u>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u>	<삭 제>
3. ~ 5. (생략)	3. ~ 5. (생략)
<신설>	6. <u>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u>
6.·7. (생략)	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10조의2(성능 및 품질 향상 지원) 정부는 <u>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u>

현 행	개 정 안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시험·평가기반 조성 2.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국내외 품질 표준화 및 인증제도의 개발·보급·확산 3.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기 개발사업의 대상을 기존의 특정 항공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며, 아울러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항공우주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음.

○ 또한, 항공기 개발사업 대상 확대를 통한 정책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중견 항공우주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항공우주 공급망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미래 항공기 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기 개발 사업의 적용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려는 것임.

-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적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더라도 대상은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1)에 따른 ‘항공기’의 정의 범주 내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입법 취지와 달리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항공기²⁾가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골공기·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기구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https://www.kari.re.kr>)에서 발췌

-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 도심 내 3차원 공중교통 체계를 활용한 항공운송 생태계
-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 Landing) : 드론과 항공기를 결합한 UAM

명확히 포함되지 못하거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현행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전반에 대한 육성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향후 등장할 미래형 항공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정의를 보다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게 재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상 항공기 유형]

구분	종류
항공기 (제2조제2호)	- 비행기·회전익항공기·골공기·비행선, - (시행령)기구,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개발사업 대상 항공기(제4조)	- 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 -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

- 이와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은 제2조제2호는 모든 형태의 항공기를 포함한 정의 조항으로 유관 법률인 「항공안전법」 및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서도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고,

- 미래형 유무인 겸용 개인항공기(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미래형 항공기 등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개발사업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항공기’로 확대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둘째,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 지원사업의 범위 및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특히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완성체 개발뿐만 아니라 부품·장비·소재 분야의 기술력이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이미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³⁾」,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등 관련 사업이 개정안에 따라 추진하려는 지원사업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우주항공청이 다각도로 추진중인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업 참여를 위한 민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1. 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참고]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사업 구분	현재 관련 사업 추진 내역
안 제10조의2 제1호. 항공기·우주 비행체·기기류 또 는 소재류의 시 험·평가기반 조성	•(추진중)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24~'30) •(추진중) 국산소자부품 우주 검증 지원사업('24~'27) •(추진중) 그린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24~'27) •(추진중)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26~'30) •(추진중)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26~'29) •(추진예정) 차세대 첨단 항공엔진 개발 시험설비 구축 ('28~'40)
안 제10조의2 제2호. 항공기·우주 비행체·기기류 또 는 소재류의 국내 외 품질 표준화 및 인증제도의 개 발·보급·확산	•(추진중) 항공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임무 신뢰성 보증 기술개발(R&D)('26~'29)* •(추진중) 지속가능 열가소성 항공기 부품 핵심기술개발 (R&D)('26~'30)* •(추진중)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 기술개발(R&D) ('24~'28)* •(추진중) 항공 가스터빈 엔진용 구조물 고강도 소재부품 개발(R&D)('26~'30) •(추진예정) 민군 표준화 포럼('25.4월~)을 통해 민군 공통 우주 소자 부품 표준·인증체계 추진 방향 도출중
안 제10조의2 제3호. 항공기·우주 비행체·기기류 또 는 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중) 항공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임무 신뢰성 보증 기술개발(R&D)('26~'29)* •(추진중) 지속가능 열가소성 항공기 부품 핵심기술개발 (R&D) ('26~'30)* •(추진중)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 기술개발(R&D) ('24~'28)* •(추진중) 항공 가스터빈 엔진용 구조물 고강도 소재부품 개발(R&D)('26~'30)*

	•(추진중) 차세대발사체개발(R&D)('23~'32) •(추진중)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22~'27) •(추진중) 전기화 항공기용 고바이패스 터보팬 핵심기술 개발('26~'29) •(추진중)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 718 초내열합금 주·단조품개발('23~'26) •(추진중)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핵심기술 선행개발(R&D)('26~'29)
--	---

* 연구개발 사업 목표 중 일부로 표준화 및 품질 향상에 대한 내용 포함

※ 상기 사업 내용은 현재 추진 계획중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우주항공청)

문 의 처
02)6788-5227